

12. 山林法 施行令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5,228號 1996. 12. 31

주 요 골 자

- 가.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
를 조성하는 경우 편입되는 산림의 전용시에 부과되는 산림전용부담금을 전
액 면제함(영 제24조의 5 제1항 제2호).
- 나. 산림전용부담금 면제대상자에 택지개발사업 등 산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
서 그 부지의 총면적중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가 100분의 70 이상 편입되
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추가함(영 제24조의 5 제1항 제3호).

개 정 이 유

기업의 공장용지확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시 부과되
는 산림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 『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 실천계획』
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우량농지보전 및 산지이용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
하는 『쌀산업발전종합대책』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의 면
제대상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